

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4일

특 허 청 장

대상 시설물			해제 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 주체			
특허청 직원아파트	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대로 39	특허청	매각으로 인한 사용종료	안전점검·안전조치의 필요성 상실	-